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(고위공무원단 1명, 4급 2명, 5급 3명, 6급 3명, 7급 3명) 중 4명(4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은 감축하며, 8명(고위공무원단 1명, 4급 1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2명)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1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1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12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,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30. ~ 10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사항(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사항”으로 한다.

2의2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

2의3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·적용 및 실태파악

2의4.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의5.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원

2의6. 근로시간 단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2의7.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의8. 근로시간·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

제27조제3항 중 “근로감독기획과 및 임금근로시간과”를 “근로감독기획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각”을 “근로감독기획과의”로 하며, 같은

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(고용노동부령 제17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,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고용노동부령 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4조제1항 중 “2022년 12월 11일”을 “2024년 12월 1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9]

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7항 관련)

근로감독정책단(존속기한: 2023년 1월 31일)

총계	8
일반직 계	8
고위공무원단	1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	2
행정주사	2
행정주사보	2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노동정책실) ① ~ ⑩ (생략)	제7조(노동정책실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
⑪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⑪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2의2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
<신설>	2의3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·적용 및 실태파악
<신설>	2의4.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<신설>	2의5.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원
<신설>	2의6. 근로시간 단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<신설>	2의7.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<신설>	2의8. 근로시간·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

3. ~ 12. (생략)	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
13.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른 인가·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(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	3. ~ 12. (현행과 같음)
14. ~ 18. (생략)	13. ----- -----
⑫ ~ ⑮ (생략)	상황
제27조(근로감독정책단) ①·② (생략)	14. ~ 18. (현행과 같음)
③ 근로감독정책단에 근로감독기획과 및 임금근로시간과를 둔다.	⑫ ~ ⑮ (현행과 같음)
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제27조(근로감독정책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③ ----- 근로감독기획과----- --.
⑥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근로감독기획과의 ----- -----.
1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	⑤ (현행과 같음)
2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·적용 및 실태파악	<삭제>

3. <u>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	
4. <u>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원</u>	
5. <u>근로시간 단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	
6. <u>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	
7. <u>근로시간·휴일 및 휴계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</u>	
8. <u>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른 인·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(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)</u>	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은 <u>2022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한다.</u>	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12월 11일</u> -----.
---	---